

2026년 제3차 별빛누리그룹홈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6. 08. 28. 13:00~14:00	장 소	별빛누리그룹홈 대프로그램실
참석	총 6명 (장OO, 이OO, 민OO, 윤OO, 황OO, 유O)		
회 의 내 용	1. 개회선언 : 운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참석으로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진행함. 2. 전차회의록 보고 : 전차회의에 대한 보고를 진행함. - 유O 위원: 2026년 제2차 운영위원회 안건 및 의결사항에 대해 보고함. - 민OO 위원장: 전차회의록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을 확인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함. 별다른 추가 의견이 없어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함.		
	3. 본회의 안건 진행 ○ 1호 안건 :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 유O 위원: 화성시 보조금 및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체 예산 조정 내용을 보고함. 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되었으며, 캐노피 및 CCTV 공사 등에 따라 홍보 시설비 예산을 증액하였음을 설명함. - 장OO 위원: 일부 시설의 노후화 및 보수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함. - 민OO 위원장: CCTV 등 시설공사에 필요한 전체 비용과 지출방식에 대해 질문함. - 장OO 위원: 캐노피 설치, 기존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등에 따라 시설비가 증가하였음을 설명함. - 황OO 위원: 홍보 CCTV 설치 수량 및 비용에 대해 질문함. - 유O 위원: 기존 CCTV 설치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추가 설치에 따라 비용 증가가 예상됨을 설명함. - 민OO 위원장: 세입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설비가 증가하고 다른 예산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 - 장OO 위원: 전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음을 설명함. - 유O 위원: 이월된 자부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 조정이 가능하였음을 설명함. - 민OO 위원: 공공요금 및 수용비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와 예산 편성 차이에 대해 질문함. - 유O 위원: 조식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생계비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유를 설명함.		

- 이00 위원: 조식 운영방식 및 간편식 운영 여부에 대해 질문함.
- 장00 위원: 주말 운영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함.
- 황00 위원: 주말 이용인의 식비 부담 및 식사 제공방식에 대해 질문함.
- 장00 위원: 평일과 주말의 식사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이용인의 식사량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함.
- 이00 위원: 주말 이용인 수와 흥별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함.
- 장00 위원: 이용인 이동 및 흥별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함.
- 이00 위원: 주말 운영 시 흥별 이용인 수 및 종사자 배치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함.
- 유0 위원: 외부 인권교육 강사 활용 필요성에 따라 흥별 교육재활사업비를 100만원씩 편성하였음을 설명함.
- 민00 위원장: 인건비 및 종사자 총원과 관련한 향후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함.
- 장00 위원: 종사자의 호봉 산정 및 인건비 지급 기준에 대해 설명함.
- 유0 위원: 보조금 부족에 따라 3분기 예산 및 인건비를 조정하게 된 상황을 설명함. 퇴사자가 발생한 흥의 인건비 잔액을 활용하고 신규 직원은 일정 호봉으로 산정하도록 화성시의 안내를 받았음을 설명함. 인건비 보조금 감소 및 도비·시비 부족으로 향후 인건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됨을 설명함.
- 유0 위원: 3분기 예산 및 명절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여 부족한 예산을 조정하고 있음을 설명함.
- 이00 위원: 사업비와 달리 인건비를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유0 위원: 인건비를 줄이기는 어려우나 현재 보조금 상황이 좋지 않아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함.
- 민00 위원장: 연료비 등 다른 예산을 상당 부분 감액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
- 유0 위원: 기존 이월예산이 있어 일정 부분 여유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함.
- 장00 위원: 시설 노후화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비 지출이 필요하며, 재정 상황에 맞춘 예산 조정이 필요함을 설명함.
- 유0 위원: 과거보다 재정 여유가 감소한 상황으로 예산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 민00 위원장: 주말 이용인에게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는지 질문함.
- 이00 위원: 일부 이용인에게만 주말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제기함. 주말 이용자에게 일정 부분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이00 위원: 전체 이용인이 납부하는 비용으로 일부 이용인의 주말 운영비를 부담할 경우 다른 이용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평일·주말 이용의 차이는 이용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볼 필요가 있으나 장기적인 운영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주말 이용이 제한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식비 부담임을 설명함.

- 황00 위원: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과 종사자 배치 상황에 대해 질문함. 주말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주말 식사 및 주방 인력 확보에 따른 비용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이00 위원: 주말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용하지 않는 이용인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 황00 위원: 주말 이용인의 식사 제공방식에 대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 운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민00 위원장: 주말 이용인의 아침·점심·저녁 식사 제공방식에 대해 질문함.
- 이00 위원: 보호자가 식사를 별도로 준비하는 경우와 시설 식비가 별도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유0 위원: 주말 식사비 증가에 따라 전체 생계비 예산을 조정하였음을 설명함.
- 장00 위원: 주말 식사 준비가 흠별로 이루어지는 방식과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해 설명함.
- 이00 위원: 주말 이용인의 식사를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 장00 위원: 흠별 특성과 종사자의 운영방식에 따라 식사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함.
- 민00 위원장: 주말 식사비를 예산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함.
- 장00 위원: 주말 식사비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생계비 예산이 증가할 수 있음을 설명함.
- 유0 위원: 생계비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실제 식사비 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임을 설명함.
- 이00 위원: 금요일 저녁 및 주말 식사 제공방식에 대해 질문함.
- 유0 위원: 흠별 상황에 따라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가정에서 준비하는 등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함.
- 이00 위원: 주말 식사에 별도의 비용을 책정하는지 확인함.
- 유0 위원: 특정 식사별로 별도 비용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생계비 지출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한 것임을 설명함.
- 이00 위원: 식재료 구입비를 기준으로 실제 식비를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 민00 위원장: 식비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식자재 공급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장00 위원: 과거 식자재 공급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비용 및 운영상의 문제로 중단하게 된 경위를 설명함. 과거 간편식 중심의 조식에서 이용인과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반식 중심으로 변경한 배경을 설명함.
- 유0 위원: 현재 아침·점심·저녁을 일반식에 가깝게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함.
- 황00 위원: 아침과 점심 식사 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식을 간편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 이00 위원: 식자재 구입방식 및 보호자가 음식을 준비해 오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이용인의 식사량이 많은 경우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기보다 시설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 유0 위원: 이용인의 식사량 및 체중 증가에 따른 보호자 상담 등 건강관리 측면의 어려움을 설명함.

- 이00 위원: 과거 간편식 중심의 조식 운영사례를 언급하며 운영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시함.
- 유0 위원: 현재 이용인이 선호하는 메뉴를 반영하여 충분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을 설명함.
- 이00 위원: 이용인의 식습관과 선호도를 고려하되 특정 음식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식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유0 위원: 흥별로 이용인의 식습관과 선호도가 달라 개별적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함.
- 황00 위원: 주말 이용이 증가할 경우 주말 식사비 및 운영비도 함께 증가할 수 있음을 의견으로 제시함.
- 장00 위원: 주말 이용자 증가 시 현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함.
- 황00 위원: 주말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보호자의 부담인지 종사자의 주말근무 부담인지 질문함.
- 장00 위원: 종사자들이 입사 당시 주말근무 가능 여부에 동의하더라도 장기근무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함.
- 황00 위원: 주말근무가 운영상 기본적인 규칙이라면 기존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함.
- 유0 위원: 본인 입사 당시 주말근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었다고 설명함.
- 장00 위원: 주말 운영 과정에서 근무시간 및 교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함. 주말근무자와 평일근무자 간 근무일정 조정이 필요하며, 적절한 휴무를 부여하여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 이00 위원: 보호자도 원활한 교대 및 근무운영을 위해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 장00 위원: 현재 인력은 대부분 충원된 상태이나 향후 종사자의 지속근무 여부와 주말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설명함.
- 황00 위원: 최근 근무일정 변경으로 일부 종사자의 근무기간이 길어지고 두 명이 함께 근무하는 날이 증가한 상황을 언급함.
- 장00 위원: 기존 근무방식에서는 연차 사용 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설명함. 종사자 간 근무를 일부 중복 편성하여 연차 및 대체근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함. 주간근무와 주말근무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근무편성이 복잡한 상황이며, 가능하면 일요일 출근과 월요일 출근 방식으로 근무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황00 위원: 장기적으로 이용인의 주말 이용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 유0 위원: 1인 근무 시 이용인의 사고·질병·병원 동행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설명함.
- 황00 위원: 종사자 2인이 함께 근무하면 안정적이나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 및 퇴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종사자의 질병이나 개인 사정에 대비한 대체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유0 위원: 1인 근무체계에서는 종사자가 아픈 경우에도 휴가 사용이 어려워 장기적인 근무 지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함. 일반적인 그룹휴과 달리 주말

운영까지 이루어지는 현재 근무체계가 종사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함.

- 이00 위원: 그룹홈 설립 당시의 취지와 현재 운영환경이 달라진 만큼 장기적인 운영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이용인의 고령화와 가정 복귀가 어려운 이용인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말 운영 및 추가 인력 확보에 대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주말 전담인력 또는 서브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종사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유0 위원: 주말 운영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눔.
- 황00 위원: 보호자의 고령화에 따라 향후 이용인의 가정 복귀가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
- 이00 위원: 향후 주말 운영을 담당할 별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력 및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유0 위원: 대체인력 활용 실적이 시설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대체인력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평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함. 일부 보호자가 익숙하지 않은 대체인력이 이용인을 돌보는 것에 대해 우려할 수 있음을 전달함.
- 이00 위원: 대체인력 활용은 종사자 보호와 장기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 장00 위원: 대체인력센터의 일정에 따라 인력을 활용해야 하며 시설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음을 설명함.
- 이00 위원: 종사자의 건강과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 황00 위원: 종사자 보호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경우 대체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 민00 위원장: 1호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 재청을 받아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함

○ 2호 안건 : 2026년 3분기 사업운영보고

- 유0 위원: 3분기 사업실적을 보고함. 개별화 프로그램, 음악, 요리, 컬링, 수영, 영화, 미술 등 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설명함.
- 황00 위원: 기존 영화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진행한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가 높았으며 활동 사진을 신속하게 공유한 점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함.
- 유0 위원: 향후 연간계획 수립 시 이용인 및 보호자의 의견과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겠다고 설명함.
- 장00 위원: 모든 프로그램을 개별화하기보다는 집단 프로그램과 개별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각 홈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함. 이용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활동을 발굴하고 홈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설명함.
- 민00 위원장: 개별화 활동의 계획 및 결과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월초 이용인별 개별활동계획을 안내하고 활동 후 결과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함.

- 황00 위원: 종사자별 운영방식과 이용인의 성향에 따라 개별활동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함.
- 민00 위원장: 보호자에게 월별 개별활동계획을 간단히 안내할 수 있는 공통양식을 마련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함.
- 황00 위원: 활동사진 한 장이라도 공유하면 보호자가 이용인의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함.
- 이00 위원: 홈별 밴드 운영 및 보호자와의 사진 공유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현재 생일, 외부활동, 캠프 등 주요 활동 중심으로 사진을 공유하고 있음을 설명함.
- 황00 위원: 보호자는 많은 사진보다 이용인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한 장이라도 신속하게 공유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을 설명함.
- 민00 위원장: 전체사진 및 이용인별 사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황00 위원: 보호자들이 밴드 등을 통해 다른 이용인의 활동도 확인하고 싶어하는 상황을 언급함.
- 민00 위원장: 사진 확인 후 추가 사진을 요구하는 방식은 종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진 공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 이00 위원: 프로그램 진행 중 촬영된 사진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자에게 공유할 것인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 유0 위원: 사진 및 활동내용 공유가 이용인 간 활동 비교로 이어질 수 있어 사진 공유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 황00 위원: 활동사진이 없더라도 이용인이 직접 보호자에게 활동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 비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 민00 위원장: 개별활동, 생일잔치, 사진 공유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기준을 마련하되 홈별 특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보호자에게 홈 간 활동을 비교하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황00 위원: 홈별 단체대화방을 활용하여 각 홈의 활동사진을 공유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 이00 위원: 이용인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식사하는 등 이용인 중심의 개별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함. 종사자가 프로그램 진행과 사진촬영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진 요구나 이용인 간 비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
- 민00 위원장: 사진 공유를 명확한 업무로 규정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장00 위원: 보호자에게 활동사진을 주 1회 정도 공유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설명함.
- 황00 위원: 일부 홈에서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수영과 컬링 프로그램의 요일을 조정하여 더 많은 이용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장00 위원: 최근 컬링에 대한 이용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영 참여인원이 감소한 상황을 설명함.

- 황00 위원: 수영과 컬링을 모두 원하는 이용인이 많아 수영 참여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의견을 제시함. 종사자 2인이 함께 근무하는 날을 활용하여 수영과 컬링 참여자를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장00 위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에 따라 나누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함.
- 이00 위원: 수영 프로그램의 요일을 조정하여 수영과 컬링을 원하는 이용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민00 위원장: 2호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 재청을 받아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함

○ 3호 안건 : 기관동정사항 보고

- 유0 위원: 시설 이용인 및 종사자 현황, 신규 및 퇴직자 현황을 보고함. 상반기 이용인 간담회, 인권교육, 여름캠프, 부모간담회, 안전교육 등의 실시 현황을 보고함. 일부 의무교육이 시설평가 준비 등으로 6월 말에 집중되어 실시되었음을 설명함. 시설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함. 하반기 인권교육 실시 결과 및 향후 월중 계획을 보고하고, 건강교육, CCTV 공청회, 종사자 안전교육, 소방교육, 위생교육, 가을여행 등의 예정 일정을 전달함. 약물교육, 김장, 부모간담회, 이용인 간담회, 송년회, 성탄행사 등 하반기 주요 일정을 보고함.
- 이00 위원: CCTV 공청회에 보호자들이 참여하는지 질문함.
- 유0 위원: 해당 일정은 이용인에게 CCTV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이며 보호자 대상 일정은 아니라고 설명함. 직원 대상 CCTV 공청회는 별도 일정으로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 이00 위원: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여부 및 보호자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지 질문함.
- 유0 위원: 기존에 보호자 동의서 등을 받아 관련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함.
- 황00 위원: 과거 CCTV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던 과정이 있었음을 설명함.
- 장00 위원: 기존 외부강사의 교육방식이 이용인에게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어 새로운 강사를 섭외하였음을 설명함. 새로운 강사의 인권교육에 대한 이용인의 반응이 좋았으며, 향후 약물교육 및 위생교육 등에도 동일 강사를 활용할 예정임을 전달함.
- 황00 위원: 인권교육 사진을 통해 이용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향후 다른 교육도 활동사진을 공유하면 보호자가 교육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함.
- 유0 위원: 새로운 교육방식 활용을 위해 각 흙의 교육재활사업비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함.
- 장00 위원: 새로운 교육방식이 이용인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의견을 제시함.
- 민00 위원장: 11월 김장행사 일정에 대해 질문함.

